

[별지 제35호의2서식] <개정 2003.10.20>

년 환급 제 호

가납금(보관금)환급안내서

수신자 귀하(우편번호 주소)

1. 귀하가 당청에 납부한 가납금(보관금)중 원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환급하고자 하니 년 월 일까지 귀하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를 전화 또는 팩스로 당청 환급담당자(전화번호 〇〇〇〇, 팩스번호 〇〇〇〇 성명 〇〇〇)에게 알려주거나, 아래 무통장입금청구서를 작성, 우편 송부하여 주시면 신속히 송금하여 드리겠습니다.

(우편송부시 주소) 시 동 번지 〇〇검찰청 징수계 보관금 환급담당자 앞
--

- ※유의사항:통장은 반드시 귀하 명의의 은행예금 통장이어야 하며(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통장은 제외),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2. 귀하가 직접 출석하여 환급 청구하실 때에는 본 안내서 및 주민등록증, 도장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라며, 오후 3시까지 나오셔야 당일 환급이 가능합니다.
3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 환급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환 급 사 유

가납(보관)일	가납(보관)금액	환급금액	환급사유	비 고

년 월 일

〇〇검찰청 검사 〇〇〇 ㉠

.....자르는 선.....

년 환급 제 호

무통장입금청구서

거래은행명	예금주성명	계좌번호	연락 전화번호
			▶휴대폰: ▶자택:

본인에 대한 환급금을 위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 ㉠

(주민등록번호:)

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)